

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본 대학원이라고 한다)의 종합시험의 출제, 채점, 합격자 사정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종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등)

-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의 원장이 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본 대학원의 교무부대학원장, 학생부대학원장 및 본 대학원 석사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각 전공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

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종합시험의 출제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
3. 종합시험의 채점에 관한 사항
4. 종합시험의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
5. 종합시험의 합격자 사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관련 사항의 심의 · 결정
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종합시험 관련 사항

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소집 및 의결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1. 위원장이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 2.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(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)

- ① 종합시험 합격자 사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위원장은 본 대학원의 부원장과 변호사시험지도교수 및 본 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지명하여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내용을 심의하여 그 인용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
제7조 (종합시험 부분합격자 결정 등)

- ① 본 위원회는 각 차수별 종합시험의 부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부분합격자는 민사법, 공법, 형사법, 선택과목의 과목 구분별로 결정한다.
- ③ 부분합격의 효력은 같은 연도의 종합시험에 한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